

『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4월 23일

나. 발 의 자 : 김복자, 김근아, 김인배, 김재상, 박세진, 윤종호,
정하영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4월 26일

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복 자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출산가정과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고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임신부 및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임신부와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(50퍼센트) 조항 추가(안 제4조의2)
 - 임신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(안 제10호)
 -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(안 제11호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보건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임신부 및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출산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